

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제정	2007. 8. 3	조례 제 887호
전부개정	2012. 9. 14	조례 제1247호
일부개정	2012. 12. 11	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7. 10. 2	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8. 1. 12	조례 제1763호
일부개정	2020. 5. 15	조례 제2018호(민간위탁 관리 조례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. 12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1. 12>

1. “외국인주민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합법적으로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90일 이상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를 말한다.
2. “다문화가족”이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 - 가. 「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 -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3. 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”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. 12>

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1. 12>

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. 12>

[중전 제4조에서 이동 2018. 1. 12]

제4조(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)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1. 12]

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매년 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”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,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8. 1. 12>

1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
2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
 - 나.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·경제적 자립 지원
 - 다.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
 - 라.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
 - 마.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
3.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·홍보
4.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

5.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6.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세울 때에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. 12>

제6조(지원대상)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대상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. 12>

② 삭제 <2018. 1. 12>

제7조(지원의 범위)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 등
2.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
3.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
4. 각종 문화·체육행사의 개최
5. 외국인·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
6.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·교육사업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1. 12>

1.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
2.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
3.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, 직업교육·훈련 및 일자리 연계
4.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, 부부교육, 부모교육,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

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

5.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·지원
 6.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·건강에 대한 교육, 산전·산후 도우미 파견,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
 7.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·번역 서비스의 제공
 8.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·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
 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
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

제8조(협의회 설치)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“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7. 10. 2, 2018. 1. 12>

1. 당연직 위원: 제1부시장,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·국장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 - 가. 용인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
 - 나. 용인시교육지원청·용인동부경찰서·용인서부경찰서·용인고용센터·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임직원
 - 다.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·기관의 관계자,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,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

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7. 10. 2, 2018. 1. 12>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. <개정 2018. 1. 12>

제9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.

1. 지원계획 수립,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
2.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
3.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심의
4.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 등)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제목개정 2018. 1. 12]

제11조(운영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<개정 2018. 1. 12>

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8. 1. 12>

[제목개정 2018. 1. 12]

제12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. 12>

제13조 삭제 <2018. 1. 12>

제14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

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. 12>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
2. 사망, 국외이주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3.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5.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6. 위원회 회의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
[제목개정 2018. 1. 12]

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

제15조(시책사업 추진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. 12>

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,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현황 조사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

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후단삭제 2018. 1. 12>

제16조(외국인주민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지원을 위

하여 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센터의 설치·운영을 「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15>

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8. 1. 12]

제16조의2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1. 12]

제17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. 12>

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

제18조(세계인의 날) 시장은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. 12>

1. 기념식 및 문화·예술·체육행사
2.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
3. 명예시민증 수여, 유공자·단체(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) 격려
4.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

행사

제19조(포상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, 법인,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삭제 <2018. 1. 12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
별표 생략.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⑤4 까지 생략

⑤5 「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, 제8조제3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1부시장”으로 한다.

⑤6 부터 ⑧3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1. 12 조례 제1763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20. 5. 15 조례 제2018호, 민간위탁 관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⑮ 까지 생략

⑯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「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⑰ 부터 ㉔ 까지 생략